

이은(영친왕)-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의 결혼문제와 왕족의 양면성 : 정략결혼은 왜 필요했을까?

新城, 道彦
九州大学大学院比較社会文化学府 : 博士後期課程

<https://hdl.handle.net/2324/19883>

出版情報 : 歴史批評. 75, pp.312-343, 2006-05. 역사비평사
バージョン :
権利関係 :

【역비논단】

이은(영친왕)-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의 결혼문제와 왕족의 양면성*

— 정략결혼은 왜 필요했을까?

신조 미치히코 규슈대학대학원 박사과정, 국제사회문화(역사학)

편집자의 말 | 한국의 '왕'은 1926년 순종의 장례식 이후 우리에게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왕실의 후손들에 관한 신문기사에서, 그리고 <궁>과 같은 허무맹랑한 만화나 드라마들이 대중의 관심을 끌 때 '우리에게도 왕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뿐이다. 한국의 '왕'은 식민화에 책임이 있었고, 독립운동에서도 상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정부 수립과정이나 독립 이후에도 왕정복고는 물론 '입헌군주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조선의 '왕'은 매우 커다란 존재였다. 기념비적인 민족운동이었던 3·1운동이나 6·10만세운동이 왕의 장례식에 즈음하여 일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이 글에서 다루고 있듯이 마지막 황태자와 일본인 공주와의 결혼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는 사실이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한국이 식민지화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한국의 '왕가'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분석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왕가를 일본 왕의 가족의 하나로 설정했으면서도 양가의 결혼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딪혔던 딜레마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일본의 식민정책의 이중적 성격을 밝히고 있다. 한국의 '왕'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에 대한 분석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하지만, 그동안 연구가 거의 없었던 '이왕가'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이 논문은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조성에 의한 연구의 일부이다.

1. 머리말

통치에서는 실제 정책과 함께 체면이나 명목, 형식 역시 중요하다. 한국병합¹⁾에 관해 말하자면, 그것이 얼마나 조선의 종속화(從屬化)를 진행시켰든 간에, 통치자들은 공식적으로 조선을 일본의 한 지방이라고 설명했을 뿐 '식민지'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일본의 조선통치의 역사를 파악하려고 할 때, 이러한 실제 정책(조선과 내지²⁾의 구별)과 명목(조선과 내지의 융화)의 괴리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당시의 역사를 논할 때는 어느 한쪽만을 강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인 수탈, 참정권의 유무, 호적상의 구별 등 실제적인 정책을 강조하는 사람은 한국병합이 식민지화였다고 한다. 반면에 일시동인(一視同仁)의 통치, 공식적으로 조선을 식민지라 칭하지 않았던 점³⁾ 등을 들어 체면이나 명목을 강조하는 사람은, 조선은 일본의 일부(한 지방)이 된 것이며 식민지화가 아니었다고 한다. 이 경우 양자는 조선통치의 한 측면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조선통치란 실제 정책과 명목의 괴리를 표출하면서도 그 모순을 임시방편으로 하나로 합치려고 했기 때문에 복잡하게 뒤튼린 구조를 형성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조선통치를 파악하려면 그 복잡하게 뒤튼린 구조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 조선통치의 체면이나 명목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을까? 그 하나는 조선을 표상(表象)할 수 있었던 왕족(王族)이라는 존재와 관련되어 있었다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왕족이란 구 대한제국 황실인 광무태황제(고종), 융희황제(순종), 그리고 영친왕(이은)이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한국병합 조약을 발표함과 동시에 일본 국내에 이 왕족이라는 계급을 창설했다. 통치자들은 그들이 “황족(皇族)의 예우를 받고 특히 전하(殿下)의 경칭(敬稱)을 사용”⁴⁾한다고 설명했으나, 어디까지나 황족이 아니라 왕족이라고 했다.

이 왕족이라는 계급을 통해 한국병합의 명목(내지와 조선의 융화)이 나타난 예로, 왕족 이은(李垾)과 황족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梨本宮方子)의 결혼을 들 수

있다. 이 결혼을 통해 조선과 내지에서 '일선화합(日鮮和合)'이 끊임없이 주창되었다. 조선을 표상하는 왕족과 내지를 표상하는 황족이 결혼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식(儀式)으로 가시화함으로써, 외면상 한국병합이 조선의 일본화(융화)이고 식민지화(조선-내지의 차이화, 조선의 종속화)가 아님을 드러내려 했다고 할 수 있다.

통치자는 이처럼 한국병합의 사실을 '일선화합'이라는 표피로 가리면서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단계에서는 다양한 모순이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은과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의 결혼을 놓고 발생한 것은 황실전범(皇室典範) 개정의 문제였다. 황실전범에는, 황족은 황족 또는 특별히 인정을 받은 화족(華族=귀족)이 아니면 결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왕족과 황족의 결혼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비록 왕족에 대해 황족의 예우를 보장하고 외면상 황족처럼 대우했다고 해도, 실제로(법적으로)는 황족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본문에서 상세히 논할 것이지만, 선행연구로서 다카쿠 레이노스케(高久嶺之介)의 논문을 들 수 있다.⁵⁾ 다카쿠는 황실전범 개정문제가 추밀원(樞密院)과 제실제도심의회(帝室制度審議會) 사이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밝혔다. 이 연구는 다양한 자료를 제시한 뛰어난 논문이지만, 그 관심이 정부 내부의 대립에 있기 때문에 왕족이라는 애매한 존재와 조선통치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 특히, 왜 왕족 남자와 황족 여자의 결혼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왕족 여자와 황족 남자의 결혼은 인정하지 않았는가에 관해서는 "피는 수출하지만 수입하지 않는다"⁶⁾라고 설명할 뿐이다.

이에 대해 이영수(李英洙)의 연구는, 왕족 남자와 황족 여자의 결혼으로 황족의 정통성(正統性)이 유지되는 이유를 설명한다.⁷⁾ 이 연구는 "피는 수출하지만 수입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에 대해 왕족(남자, 여자)과 황족(남자, 여자)이 결혼하여 생기는 피의 조합을 망라하여 분석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했지만, 너무나 기계적인 방법으로 논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필자는 한국병합의 체면 형성 때문에 창설된 왕족이라는 존재를 기계적인 작업만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원래 왕족은 황족이라고도 혹은 황족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애매한 존재였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왕족은 기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왕족을 둘러싼 이해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왕족 이은과 황족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의 결혼은 당연히 정략결혼이라고 설명되어왔다. 필자도 정략결혼이었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면 이 결혼은 왜 정략결혼의 성격을 갖게 되었는가? 다시 말해, 왜 내지와 조선은 정략결혼을 해야 했는가? 만약 내지와 조선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내지와 조선의 힘 관계에 큰 차이가 있으며 조선을 '일본'⁸⁾이라고 설명할 필요 없이 구미적인 식민지(영국의 인도통치 등)로 통치할 수 있었다면, 정략결혼으로 왕족과 황족의 결혼이 계획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은과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의 결혼은 '일선화합'을 선전하기 위한 것(조선과 내지의 융화)이었지만, 동시에 황족의 정통성도 유지(조선과 내지의 구별)해야 했다. 이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결혼이 단행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는 왕족의 양면성, 애매모호성과 깊이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왕족의 양면성이란, 앞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왕족이 황족 예우를 받으면서도 황족과 구별되는 존재였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조선을 내지와 동등한 '일본'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실제 정책상 내지와 조선을 구별했던 조선통치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왕족을 통해서 한국병합 후의 역사를 보면, 명목과 현실이 괴리되어 복잡하게 뒤틀린 조선통치의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문에서는 먼저, 황족의 정통성 유지(황족에 왕족의 핏줄을 섞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떠안고 있으면서도 '일선화합'이라는 한국병합의 체면 형성 때문에 실행된 이은과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의 결혼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그 다음

에, 이처럼 황족과 구별되면서도 융화에 이용되는 모순된 성격을 내포한 왕족이라는 계급이 창설되었던 과정을 밝힘으로써, 황족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일선화합'의 표명을 위해 결혼이 단행되었던 이유를 찾아보겠다.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조선통치를 논함으로써 언제까지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한일 양국의 역사해석 문제에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또,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황실과 관련된 문화가 만화나 드라마 등의 매체를 통해 새로운 인기를 얻으며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향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던져보고 싶다.

2. 왕족—황족의 결혼과 황실전범(皇室典範) 개정문제

이 장에서는 이은과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의 결혼이 계획되고, 결과적으로 황실전범 개정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는 원래 1926년에 즉위하여 쇼와천황(昭和天皇)이 될 황태자 히로히토(裕仁)의 황후 후보였다. 그녀가 처음으로 이은과의 결혼계획을 알게 된 것은 1916년 8월 3일이었다. 그날 마사코는 어머니와 여동생과 같이 오이소(大磯)의 별장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무심코 펼친 『요미우리신문 讀賣新聞』에서 「이왕세자(李王世子)의 경사(慶事),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 여왕전하(殿下)와 약혼하심⁹⁾」이라는 기사를 보게 된 것이다. 마사코의 전기(傳記) 『流れのままに』에는, “적어도 신문에 나오기 전에, 자기 스스로 마음의 각오를 하고 ‘이 약혼을 받아들여졌습니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었다”¹⁰⁾라고 당시의 안타까운 기분과 황족이라는 공인(公人)으로 태어난 운명에 대해 적혀 있다. 또한 어머니인 나시모토노미야 이쓰코(梨本宮伊都子)는 밤에도 잠 못 들 정도로 마음이 상해 있었으나, 아버지인 나시모토노미야 모리마사(梨本宮守正)는 “일선융화(日鮮融和)를 위한 일이라면 희생도 감수하지 않을 수 없

다고 결심하신 듯했다”¹¹⁾라고도 적혀 있다. 마사코는, 황족이라는 공인(公人) 나시모토노미야 모리마사의 딸로 태어난 이상, 왕족과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 결혼계획에 대해 왕족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자료가 부족해서 이왕직(李王職) 곤도 시로스케(權藤四郎介)의 회고를 통해 이태왕(李太王)의 언동을 확인해보는 정도이다.

[이태왕은] 같은 내지에서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것이 만약 후작(侯爵)이나 백작(伯爵)의 화족(華族) 급이었다면 쉽게 동의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옛 신하에 후작이나 백작, 자작(子爵), 남작(男爵)의 귀족이 다수 있어서, 이태왕 전하는 그들을 가볍게 보시고 있다. 그들이 내지인(內地人)으로부터는 상당한 존경을 받고 있었다라도 이왕 전하나 이태왕 전하의 앞에 나오면, 황송해 하며 머리를 낮게 숙이고 완전히 옛 신하들과 같은 예를 갖추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왕 전하가 내지의 화족—조선귀족의 격에 대해 각별히 존중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황족(皇族)의 존귀함은 충분히 이해해서서 종래 각별히 존경하는 마음을 나타내시고 있었으니, 이제 그 한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된 것에 대해 이태왕 전하는 매우 만족하고 기뻐하셨다. 고쿠부(國分) 이왕직 차관이 처음 이 문제에 대해 의사를 여쭙보았을 때, 극히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순전히 이조(李朝) 오백년의 종사를 안نگ히 하기 위함이다. 이 경전(慶典)을 하루속히 거행하여 우리 노모의 쓸쓸함을 위안하시오”라고까지 전해졌다.¹²⁾

일본은 한국병합과 동시에 조선귀족이라는 계급을 새로이 창설하고, 그들을 은사금(恩謝金)과 작위(爵位)를 내리는 방식으로 회유했다. 메이지유신 이후 각지의 다이묘(大名=영주), 구교(公卿=고관귀족)에게 작위를 내려 화족으로 봉한 것과 유사한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귀족의 신분은 조선귀족령(朝鮮貴族令)으로 명문화되어 병합조약과 함

게 발표되었다.¹³⁾ 한국의 옛 신하가 화족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 왕족은 당연히 자신이 그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이태왕의 마음을 만족시킬 방법은 이은이 화족 이상, 즉 황족 출신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 결혼은 왕족을 화족 이상의 신분으로 황족과 동등하게 생각했던 이태왕과, 왕족과 황족을 하나로 맺음으로써 한국병합의 명목에 리얼리티를 부여하고자 한 일본정부나 총독부의 뜻이 합치되어 실현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¹⁴⁾

그런데 왕족은 명확한 규정을 가진 계급이 아니고, 황족인 것 같으면서도 황족이 아닌 존재였다. 황실전범(皇室典範)이라고 하는 황족의 가법(家法)에 의해 규정받는 황족이 이러한 왕족과 결혼하는 데 문제가 없을 리 없었다. 황실전범 제7장 황족 제39조를 보면, 황족이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은 황족이나 칙지(勅旨)로 인정받은 화족에 한정되어 있었다. 왕족과 황족의 결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왕족을 황족(또는 화족)으로 간주하거나, 황실전범을 개정하여 황족과 왕족의 결혼을 인정해야 했다. 따라서 왕족과 황족의 결혼계획은, 법적 근거를 등한시한 채 통치이념의 실현을 위해서만 내달린 계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황실전범 개정 반대파였던 이토 미요지(伊東巳代治)도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의 하나로, 결혼계획을 천황에게 주천(奏薦=천황에게 말씀을 드리고 추천하는 일)한 지금에 와서 전범을 개정해야 한다면 전범에 맞지 않는 계획을 주천한 것이 되어, 전범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고 주장했다.¹⁵⁾

이 문제는 추밀원(樞密院)과 제실제도심의회(皇室制度審議會) 사이에서 황실전범 개정논쟁으로 발전했다. 황실전범 개정 반대 입장을 취한 제실제도심의회는 왕공가계범(王公家軌範)¹⁶⁾을 기초(起草)하여, 1917년 12월 17일에 궁내대신(宮內大臣)을 통해 천황에게 상주(上奏)했다. 애매한 왕족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황실전범 제39조의 황족과 결혼할 수 있는 범위에 왕족이 포함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¹⁷⁾ 왕공가계범안(案)의 규정은 “왕공족(王公族)이 국법상 황족에 준거하여 그 대우를 받는 것은 조약 및 조서(詔書)에서 볼 수 있는

사항이고, 일반 신민(臣民)이 준수해야 할 법규에 의해 왕공족을 규정할 수 없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전문(前文)에서 밝히듯이, 왕족=준(準)황족=황족으로 간주한 것이었다.

그러나 왕공가례법의 제정에 의해 황실전범 제39조에 규정된 황족의 결혼 대상을 왕족에까지 확대함으로써 황실전범을 개정하지 않고 왕족과 황족의 결혼을 실현하고자 했던 제실제도심의회의 의도는, 1918년 6월의 추밀원심사위원회(樞密院審査委員會) 자문에서 좌절된다. 추밀원은 왕공가례법을 규정해도 황실전범에 있는 황족의 결혼 대상에 왕족이 부합함을 증명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즉 왕공가례법에 의해 왕족의 입장은 규정되지만, 어차피 왕공가례법은 왕공족의 신분과 재산을 규정하는 것 이상이 아니며, 그것을 가지고 왕족과 황족의 결혼이 황실전범 제39조의 법적 근거를 얻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추밀원이 왕공가례법 제정을 통해 결혼을 진행시키는 데 반대한 이유는 사실 다른 곳에 있었다. 이것에 관해서는 다카쿠(1984)의 논문에 상세히 분석되어 있다. 왕공가례법 제112조에는 “황족 여자가 왕공족에게 시집갈 때는 결혼의 의예(儀禮)를 행함. 먼저 가시코도코로(賢所) 고레이덴(皇靈殿) 신덴(神殿)에 참배하고 또한 천황(天皇), 황후(皇后), 태황태후(太皇太后), 황태후(皇太后)를 알현함”이라는 규정이 있었다. 여기서 다카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추밀원은] 조선 왕공족이 혼인문제에서 황족과 동일한 자격을 지니는 것은 황실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인식했다고 생각된다. 황실은 순수하게 일본의 ‘황통(皇統=황족의 정통성)’만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¹⁸⁾ 이 때문에 추밀원은 왕공가례법의 제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추밀원의 입장에서도 조선통치상의 필요 때문에 이 결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실현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왕공가례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상, 결혼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황실전범을 개정하여 황족과 왕족의 결혼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황실전범 개정의 초안을 맡은 사람은 제실회계심사국(帝室會計審査局) 장관인 구라토미 유자부로(倉富勇三郎)였다. 그의 안(案)은, 황실전범 제39조에 “여왕(女王)¹⁹⁾은 왕족 또는 공족(公族)에게 시집갈 수 있음”이라는 단서(但書)를 추가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개정 반대파의 이토 미요지는 황실전범을 개정할 경우의 네 가지 문제점을 하타노(波多野) 궁내대신에게 전했다. 그 중 두 가지는, “① 결혼을 여왕에 제한한다고 하면 왕공족의 지위는 화족보다도 낮고, 예를 들면 구 유구번주(琉球藩主)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奇觀)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② 왕공족이 일본의 황실에 시집가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상 칙허(勅許)는 없겠지만, 이를 명문상에 규정하여 조선의 옛 신하의 감정을 해한다면 조선통치에 큰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²⁰⁾라는 것이었다. 황실전범을 개정하여 왕족을 화족과 동등한 지위 또는 그 이하로 간주해버린다면 조선통치상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왕공가계범을 실현시키지 못한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내각 다음으로 수상이 된 하라 타카시(原敬)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황실전범을 개정하고 조선 왕족을 완전히 신하로 보는 것은 조선통치에 상당한 곤란을 야기시킬 것이다”²¹⁾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는 조선통치를 고려할 때, 황실전범을 개정하지 않고 칙허(勅許)를 가지고 결혼을 행하거나(=왕족을 화족으로 간주함), 황실전범을 개정해서 왕족은 황족이 아니라고 명시하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추밀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왕공가계범을 제정하여 왕족을 준(準)황족=황족으로 간주하거나, 황실전범을 개정하지 않은 채 칙허(勅許)도 없이 결혼을 행함으로써 왕족을 황족의 범주에 넣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1918년 11월 1일에 황실전범 개정문제를 놓고 임시 추밀원본회의(樞密院本會議)가 개최된다. 평소 거의 출석하지 않았던 야마가타(山縣) 추밀원 의장을 비롯해서 기요우라(清浦) 부의장이 자리했고, 고문관으로는 이치키(-木)·고마쓰바라(小松原)·도미이(富井)가 출석했다. 또 내각에서 하

라 수상 이하 전 각료가, 궁내성에서는 하타노 궁내대신과 구라토미 제실회 계심사국장이 출석했다. 황실전범 개정 반대론자인 이토 미요지 제실제도심의회 총재는 출석하지 않았다. 황실전범 개정을 주장하는 법이론파인 호즈미(穂積)·도미이·이치키가 출석했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황실전범이 개정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의 결론은, 황실전범 제39조는 그대로 보존하고 새로이 “황족 여자는 왕족 또는 공족에게 시집갈 수 있음”이라는 조항을 증보(增補)하는 것이었다. 구라토미의 단서안(但書案)에서 ‘여왕’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황족 여자’로 바뀌었다. 왕족이 여왕(女王=천황으로부터 5촌 이하의 여성 황족)과만 결혼할 수 있다고 하면, 내친왕(內親王=천황으로부터 4촌 이상의 여성 황족)과 결혼할 수 있는 화족보다 낮은 지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를 피했던 것이다. 또 증보안(增補案)에 준거한 결혼에서는 가시코도코로(賢所) 참배가 제외되었다.

증보라는 애매한 형태로 문제를 해결한 이유는, 황실전범을 개정하여 왕족이 황족이 아님을 명시하는 일을 피함과 동시에, 왕족을 황족으로 간주하지 않고 황통(皇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종의 수단이 그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²²⁾

여기에서, 왜 황실전범에는 “황족의 혼가(婚家)는 황족 또는 칙허에 의해 특별히 인정을 받은 화족에 한함”이라는 규정이 포함되었는가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스즈키 마사유키(鈴木正幸)는 그것을 ‘귀종성(貴種性)의 유지’라고 언명한다. 메이지유신 이전에는 고노에(近衛), 구조(九條), 이치조(一條), 니조(二條), 다카쓰카사(鷹司)의 고셋케(五攝家)에서 황후가 될 사람을 선택했으나, 메이지유신 때 셋쇼(攝政)와 감파쿠(關白)²³⁾가 폐지되자 새로이 혼가(婚家)의 자격을 설정할 필요성이 생겨났다고 한다. 그때 황실의 ‘귀종성’을 유지하기 위해 황족 이외에는 제한된 화족만이 황족과 결혼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다.²⁴⁾

이 ‘귀종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황실에 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일본 황실의 특징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로서 '만세일계(萬世一系)'가 있다. 이것은 황실의 핏줄은 왕조의 쇠퇴나 혁명에 상관없이, 시조(始祖)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계승되어왔다는 역사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황실이 정치 권력을 계속 잡고 있던 것은 아니고, 가마쿠라(鎌倉)·무로마치(室町)·에도(江戸)시대 정치의 실권은 무사가 잡고 있었다. 황실은 실권 없이 국가 군주의 상징으로서만 이용되었기 때문에, 왕조의 쇠퇴와 상관없이 계속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황실의 상징성과 '만세일계'의 역사이데올로기를 최대한 이용한 것이 메이지(明治) 정부였고, 그때 근대 황실의 '귀종성'이 확립되었다. 이 '귀종성'에 대한 관념은 현대 일본에도 뿌리 깊게 잔존하고 있어, 1980년대 후반에 쇼와천황(昭和天皇)이 위독상태에 빠졌을 때도 일반인의 혈액을 수혈해도 되는지 여부가 문제시되었다.

이은과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의 결혼이 계획되었을 때, 추밀원은 이 '귀종성'을 유지하기 위해 왕공가계법을 제정하여 왕족을 황족으로 간주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모순이 발생한다. 추밀원이 황실의 '귀종성'을 중요시했다면, 왕공가계법을 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은과 마사코의 결혼 자체를 반대해야 옳지 않았을까? 그러나 결혼에 관해서는 정부나 총독부뿐만 아니라 추밀원 역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일치된 의견을 지니고 있었다. 즉, 이은과 마사코의 결혼이란 단순히 단 한 번에 그치는 왕족과 황족의 결혼으로 계획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추밀원으로서 이 한 번의 결혼을 통해 내지와 조선의 '융화'를 시사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왕족과 황족의 결혼을 관계화시킬 생각을 지닌 게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왕공가계법을 제정해서 왕족을 황족으로 간주하는 것도, 또한 황실전법 제39조를 개정하여 왕족과 황족이 차후에도 결혼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반대했던 것이다.

증보(增補)된 문장이 황족 여자와 왕족의 결혼만 인정할 뿐, 황족과 왕족이 결혼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않은 점도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만약 왕

족 여자와 황족 남자가 결혼하면, 황족 핏줄에 왕족 핏줄이 섞이는 것이 된다. 그러나 왕족 남자와 황족 여자가 결혼하면 황족 여자가 왕족이 되기 때문에 황족 핏줄에 왕족 핏줄이 섞이지 않는다. 즉 증보라는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왕족이 황족이 아님을 명백히 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황통(皇統)에 왕족을 넣지 않으려 방과제를 쌓은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은과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의 결혼계획에 있어서도 알 수 있듯이, 왕족이란 황족으로 간주해야 하면서도 또한 황족으로 간주하면 안 되는 존재였다. '융화'를 나타내는 단 한 번의 결혼은, 왕족이 가지는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성격으로 인해 우왕좌왕하면서 진행되었다. 그러면 왜 일본은 황통을 유지하고자 하면서도 동시에 황족으로 간주되는 왕족을 창설해야 했을까? 또한 왜 정략결혼을 해서까지 조선과 내지의 '융화'를 나타내야 했을까? 이러한 문제들을 왕족이라는 계급이 창설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밝히고 싶다.

3. 왕족 창설 과정

왕족은 「한국병합에 관한 조서(詔書)」와 함께 발표된 「전 한국 황제를 책립(冊立 책봉)하여 왕으로 하는 조서(詔書)」²⁵⁾에 의해 창설되었다. 그러므로 왕족이 어떻게 창설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병합 조약이 성립되는 과정을 밝혀야 한다.

테라우치 마사타케가 '시국해결'을 위해 한국에 부임한 것은 1910년 7월 23일이다. 그때부터 통감부(統監府)는 한국정부와 궁내부(宮內府, 한국 황실에 관한 사무를 맡는 한국의 기관. 일본 황실에 관한 사무를 맡는 일본의 기관은 궁내성이다.)를 상대로 조약 체결에 관한 교섭을 시작했다. 동시에 일본내각(이하 '내각' 이라고만 적은 것은 일본내각을 의미함)은 한국병합에 관한 법 정비를 위해 각 성(省) 및 통감부와 협의하면서 긴급칙령안(緊急勅令案)²⁶⁾에 수정을 가했다. 이처럼 조약 체결과 그

조약에 관련된 각 안건을 긴급칙령으로 성립시키는 과정은 같은 시기에 진행되었으나, 이를 맡은 조직은 각각 나뉘져 있었다. 조약 체결과 긴급칙령 제정 과정은 통감부라는 중개기관을 매개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나, 통감부는 한국에 있었으므로 내각의 내부 사정을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원래 통감부란 외교에 관해, 외무대신의 감독하에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천황에게 직례(直隸)하여 친재(親裁)를 받아들이고 국무를 시행함'이라고 해서 내각으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기도 했다. 즉, 통감은 '한국에서는 제국정부를 대표'²⁷⁾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시국해결'을 위해 한국에 부임한 데라우치 통감의 역할은, 긴급칙령 제정보다는 일본정부 대표로서 한국정부 대표와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에 관해서, 병합 조약 체결 당시 통감부 외사국장(外事局長)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고마쓰 미도리(小松綠)는,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조약 및 선언에 관한 대외관계에 속하는 사무는 주로 외무성에서 주관(主管)하고, 통감은 병합 실행의 역할을 맡으며 또한 병합 후의 조치를 맡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²⁸⁾

이렇게 통감부와 내각의 연대가 잘 안 되는 불안정한 상황하에서 한국병합 계획은 진행되었다. 당연히 이 계획은 혼선을 빚게 되었다. 그것은 예컨대 통감부에서 수상 및 각 대신에게 보낸 중요문서가 도착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났다. 통감부는 8월 7일, 한국병합에 관한 법령안에 통감부 의견을 더해 수정한 문서를 나가오(長尾) 촉탁에게 맡겨 도쿄로 보냈다. 그런데 나가오가 좀처럼 도착하지 않아, 내각은 시급히 서류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통감부에 전했다. 8월 14일에 통감부는, 도청의 위험을 무릅쓰고 외무성을 중개하여 한국병합에 필요한 법령 전부를 전보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결국 나가오가 도쿄에 도착한 것은 통감부가 외무성에 전보를 보낸 다음 날, 즉 한국을 출발하여

일주일 이상 경과한 8월 15일이었다.

마침 이때 일본 국내에서는 사망자가 1,061명에 이르는 대홍수가 발생했다. 나가오가 도쿄에 도착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홍수로 인한 교통차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가오의 도착 지연보다 더욱 큰 문제가 이 홍수에 의해 야기되었다. 그것은 수상으로서 한국병합 계획을 진행시켜야 했던 가쓰라 타로(桂太郎)가 가루이자와(輕井澤)에 있는 별장에 발이 묶여버린 것이었다.(8월16일 탈출, 17일 도쿄 도착) 이 당시 내각의 혼란은 시바타(柴田) 서기관장이 통감부에 보낸 다음의 전보로부터 엿볼 수 있다. “수상이 안 계시는 탓에 의견을 물어볼 수가 없다.” “수상이 안 계시는 탓에 궁내성과 협의를 열 수가 없다.” “천재(天災) 탓에 쌍방의 계획이 서어(顛蹶=어긋남)한다.”²⁹⁾

대홍수로 일본이 혼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데라우치 통감이 8월 13일에 내각에 ‘시국해결’에 착수한다는 생각을 전하고, 조약 체결을 위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병합 과정은 급속히 진행되었다. 8월 15일에 고마쓰 미도리와 이완용 수상의 비서 이인식(李人植)이 대화를 가지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던 것 같다. 다음 날 16일에 홍수 위문이라는 핑계로 통감저(統監邸)를 방문한 이완용 수상은, 데라우치 통감과 함께 병합에 관한 각서(覺書)를 수교했다. 이렇게 해서 8월 18일에는 창덕궁에서 상례각의(常例閣議)가 열렸고, 한국내각에서 병합의 결의(決議)가 성립되었다. 이를 기초로 8월 22일 한국 황제가 이완용 수상에게 조칙(詔勅)을 내려 병합안을 가납재가(嘉納裁可)하면, 조칙을 받은 이완용 수상이 통감저를 방문하여, 이완용 수상과 데라우치 통감이 조인(調印)하는 형식으로 한국병합이 성립되었다.³⁰⁾

그런데 일본 국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홍수로 혼란에 빠져 있었는데, 조약 체결 과정은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었을까? 8월 14일에 내각에서 통감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보가 보내졌다. “7일에 보낸 나가오는 아직 도쿄에 도착하지 않았다. 또 외무성을 거쳐 보낸 전보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중에 도착하고, 통감부와 별도로 협의할 필요가 없다면 오늘 내일 중에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천황에게 상주(上奏)한 후 추밀원에서 자문하고 다시 상주 수속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서둘러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전보를 보면, 홍수로 인해 나가오의 도쿄 도착이 늦어지면서 협의를 위한 시간 여유가 상당히 제한되어버린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내각은 통감부에 “이번 주 중에 조약을 발표하는 것까지 계획을 진행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궁내성안(宮內省案)은 협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너무 곤란하다”라며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내각이 특히 ‘궁내성안’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조약 체결 직전까지 협의 대상으로 남아 있었던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여기서 궁내성안에 관련되는 한국 황실의 처우문제가 언제 협의되기 시작했고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한국병합 조약의 조문을 재검토함으로써 한국병합의 명목이 무엇이었는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약의 조인이란, 한국과 일본이 ‘한국병합’을 어떠한 계약으로 성립시킬까 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표명하는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병합 조약은 불과 8조의 조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 제1조는 “한국 황제 폐하(陛下)는 한국 전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도(讓渡)함”이고, 제2조는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前條)에 기재된 양도를 수락하고 또한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승낙함”이다. 조약의 필두로 내건 이 제1조와 제2조야말로 한국병합의 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문장에 의하여 표면상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측의 ‘양도’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통치권의 ‘양도’를 실행한 한국 황제를 ‘일본’ 국내에 보존하는 것이었다. 그것도 단순히 ‘일본’ 국내에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지와 조선이 동등한 입장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했다. 통감부와 내각은 이 방법을 둘러싸고 조약 발표 직전까지 ‘궁내성안’을 협의했다.

이 한국 황실 처우(處遇)문제는 병합방침이 기안되었을 때부터 중요안건이

었다. 병합문제가 본격적으로 협의되기 시작한 것은 1909년 4월 10일, 레이 난자가(靈南坂)에서 열린 가쓰라 타로(桂太郎),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회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가쓰라와 고무라는 병합 반대론자였던 이토를 설득하여 병합 찬성을 얻어낸다. 그리고 2개월 후 이토가 통감을 사임하기 전에 고무라 의견을 바탕으로 외무성 정무국장 구라치 데쓰키치(倉知鐵吉)가 제1호 방침서 및 시설대강서(施設大綱書)를 기안했다. 이것을 더욱 수정하여 제2호 방침서가 작성되었다. 그 속에는 '왕가(王家=한국 황실)를 태공(太公) 전하로 함'이라는 방침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고무라와 이토 사이에서 의견일치를 본 것이었다. 이후 1910년 6월 초순부터 7월 하순까지 병합을 더욱 자세히 연구하고, 수상 관저에서 열린 병합준비위원회(併合準備委員會)에서 원안(原案)이 의정(議定)되었다. 여기서 먼저 의제로 올린 것은 '한국 황실 및 공신(功臣)의 처분'이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현 황제의 존칭(尊稱)을 태공(grand duke)이라고 하고, 이는 세습하는 것으로 함. 단, 선제(先帝=고종)는 그 대에 한해서 태공(太公)으로 함", "의친왕(義親王) 이하 한국 황족에 대해서는 공작(公爵)을 수여함"³¹⁾이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병합준비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협의된 문제는 한국 황실 및 공신(功臣) 처우에 대한 것이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는 고마쓰 미도리의 다음과 같은 회고에서도 알 수 있다. "외교문제도 중요했지만 지금 당장 긴급한 문제는 한국 황제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고관 귀족들을 어떻게 처우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 전체를 어떠한 방침으로 지도할 것인지, 이 세 가지였다."

이 한국 황실 처우안은 7월 8일의 형식적인 각의(閣議) 결정을 거쳐 친황의 재가(裁可)를 얻게 되고, 병합방침 안에는 "현 한국 황제인 이가(李家)는 세습하게 하고 그 정통에게는 태공(太公), 그 세사(世嗣=후사)에게는 공(公)을 칭하게 하고, 현 태황제(太皇帝)에게는 그 대에 한해 특별히 태공(太公)의 존칭(尊稱)을 수여함", "의친왕(義親王) 이하 이조(李朝)의 황족에 대해서는 그 반위(班位)에 따라서 황족처럼 대우하고 또한 공작, 후작, 백작을 수여하여 상당한 공

채증서를 하사(下賜함)³²⁾이라고 명기되었다. 이 시점에서는 한국 황제를 태공으로 책봉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국 황제를 공(公=public)이라는 한자를 사용해서 책봉하려고 한 것은, 특정한 국가나 지역을 연상시키는 명칭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여기서 한국 황실을 '전하'라는 경칭을 사용하여 마치 일본 황실처럼 예우하면서도 동시에 황족이 아닌 '태공'이라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려고 했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일본은 내지와 조선이 동등한 입장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한국 황제를 일본 황실과 동등하게 책봉해야 했지만, 일본 황실 안에 넣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 황실 처우안을 가지고 7월 23일에 한국에 부임한 데라우치 통감은 8월 16일에 처음으로 이완용 수상과 병합에 관한 회담을 연다. 그때 이완용 수상은 병합 조약 체결의 조건으로 '대한제국'이라는 명칭을 소멸시키고 '조선'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은 받아들였지만, 한국 황제의 명칭에서 '왕(王)'자를 없애는 방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공'이라는 칭호를 준비했던 일본의 병합안에 대하여 한국 측은 왕호(王號)를 요청한 것이다. 그날 밤, 이완용 수상 대신에 조중응(趙重應) 농상공상(農商工相)이 데라우치 통감을 방문하여 '현 황제는 창덕궁 이왕(李王) 전하, 태황제는 덕수궁 이태왕(李太王) 전하, 황태자는 왕세자(王世子) 전하의 칭호를 사용해서 한국 황실 및 원로(元老)의 의향(意向)을 완화시키는 것'을 요구했다. 데라우치 통감은 왕호에 관해 타협하지 않으면 조약 체결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걱정하여 왕호 사용을 인정했다.³³⁾ 8월 15일에 고마쓰 미도리가, "현 이완용 내각이 병합 담판(談判)에 응할지 어떨지를 확인하려는 것은 무리한 주문이고, 쓸데없는 노력으로 끝날 것임에 틀림없다"³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점에서 통감부 측은 조약 체결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왜 이완용 수상이 집요하게 왕호를 남기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한제국이 성립한 것은 1897년이었고, 그 전까지 조선은 중화세계(中華世界)의 일부분이었다. 중화세계에서는 '국가(國家)'와 '사직(社

稷=땅을 맡는 신과 곡식을 맡는 신)이 동일시되었다. 그러므로 그 땅이 '국가'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땅의 '사직'을 제사 지내는 '왕'이 있어야 했다. 이 중화 황제(中華皇帝)에게 인정된 '왕'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으면 '국가'가 될 가능성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완용은 끝까지 그 '이름'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³⁵⁾ 융희황제가 민병석(閔丙奭)과 윤덕영(尹德榮)을 통감에게 보내 전했던 인사문에서도, 자신은 이후 국무에 손을 떼고 "단지 우리 일가(一家)를 정리하여 우리 종가(宗家)의 제향(祭享)을 영구히 남기게 한다"³⁶⁾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완용의 그런 행동을 단순히 애국심이라고만 설명할 수는 없다. 조중응이 황실 및 원로(元老)의 의향(意向)을 완화시킬 것을 요구한 것처럼, 한국정부나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측면도 있었다. 또한 자기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근거인 '왕'을 지키려고 했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상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병합 문제는 이렇게 왕호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줄다리기 속에서 점차 진행되었다. 병합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한국 황실 처우안이 조약 체결 불과 6일 전에 갑자기 변경되었기 때문에, 통감부와 내각은 새로운 대응을 서둘러야 했다. 한국 측의 왕호 요청을 받아들인 데라우치 통감은 8월 17일자 전보로 책봉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 전보를 받은 가쓰라 수상은 다음 날 조서(詔書)를 '공'에서 '왕'으로 고쳐 쓰는 것을 승낙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히 끝나지 않았고, 왕호 문제는 더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다. 통감부 측이 내각이 작성한 조서안(詔書案)에 '책립(冊立)하여 왕으로 함'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문제시한 것이다. 8월 23일, 통감부의 고다마(兒玉) 비서관은 '조선왕(朝鮮王)'이라는 명칭처럼 한 지방의 대표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명칭은 장래 화근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왕' 위에 '이(李)'를 붙여서 '이왕(李王)'이라고 칭하게 하도록 요청했다.³⁷⁾ 이 요청을 받은 내각의 시바타(柴田) 서기관장은 "조서(詔書) 중 이왕을 왕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내주신 전보처럼 생각했으나, 여하튼 문장상에서는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보내주신 전

보에 의거하여 궁내성과 협의했는데, 현재 위와 같은 주지를 보충하는 고시안(告示案)을 내는 것으로 해결할까 생각 중이다”³⁸⁾라는 답장을 보내, 이미 확정된 조서(詔書)를 고쳐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번에는 데라우치 통감이 가쓰라 수상에게 전보를 보내 이의를 밝혔다. “왕책립(王冊立)의 조서(詔書) 중, 저는 특히 이왕(李王)이라는 문자를 사용했는데, 그쪽에서 이것을 단지 왕(王)이라는 문자로 고쳐 쓰셨다. (...) 단순히 왕이라는 칭호(稱號)를 사용한다면 종래의 사정을 고려할 때, 조선왕(朝鮮王)이라고 칭하고 싶은 희망을 제안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왕(李王)이라는 문자를 선택하여 미리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다. 조서(詔書)를 확정했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고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고려하시기 바란다”³⁹⁾라는 내용이었다. 즉 조서(詔書)의 문구를 ‘왕(王)’에서 ‘이왕(李王)’으로 고치도록 요청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가쓰라 수상은 “궁내대신과도 깊이 협의하여, 조서안(案) 중 ‘책립하여 왕으로 함’의 아래 ‘창덕궁이라고 칭하여’라는 부분을 ‘창덕궁 이왕이라고 칭하여’로 고치고, 또한 ‘덕수궁이라고 칭하여’라는 부분은 ‘덕수궁 이태왕이라고 칭하여’로 고친다”⁴⁰⁾라고 답했고, 조서(詔書)는 ‘왕(王)’에서 ‘이왕(李王)’으로 ‘태왕(太王)’에서 ‘이태왕(李太王)’으로 수정되었다. 일본은 한국의 통치권을 ‘양도’한 한국 황제를 ‘일본’ 국내에 보존해야 했으나, 그때 한국 황제를 일본(=일본 황실)에 대립하는 한국(=한국 황실)으로서가 아니라, 원래 한국의 한 가족인 이왕가(李王家)로서 ‘일본’에 편입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은과 마사코는 1927년에 1년간 유럽 여행을 떠났는데, 이 계획도 왕족의 호칭 때문에 실현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유럽 신문이 이은을 ‘Prince of Lee’가 아니라 ‘Prince of Korea’라고 쓰는 것을 걱정한 일본정부가, 좀처럼 여행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단 중지된 이 계획은 이왕직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가 정부에 직접 교섭함으로써 겨우 실현된다. 그 조건은

여행을 비공식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었다.⁴¹⁾ 이 예도 일본정부가 왕족의 호칭에 대해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를 알려준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왕족을 한국의 한 가족인 이왕가로서 책봉하고는 있으나, 왕족보(王族譜)라는 왕족의 호적에는 이름만 써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왕세자는 ‘이은(李根)’이라고 하지만 호적상에는 ‘根’이라고 표기되어 있다.⁴²⁾ 이것은 왕족을 황족 범주에 넣었다는 의미이다. 씨(氏 성)는 황족이 신하에 대해 부여하는 것이므로 황족은 씨를 가지지 않는다. 왕족에게 씨(氏 성)를 붙이지 않음으로써 황족의 신하(臣下)로 간주하지 않는 한편, 책봉의 조서(詔書)에는 ‘왕(王)’이 아닌 ‘이왕(李王)’으로 써놓았다는 점에서 당시 왕족 책봉의 복잡함을 엿볼 수 있다.

4. 황족인 왕족과 황족이 아닌 왕족

한국 황실 처우안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병합이 한국 황제에 의한 통치권의 ‘양도’이며, 내지-조선의 계층화가 아니라는 명목을 표명하는 데 중요한 안건이었다. 그 때문에 통감부와 내각의 협의는, 왕족의 ‘일본’에서의 지위나 명칭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한국 황실 처우문제에 관한 통감부와 내각의 협의가 대홍수로 인한 수상의 부재 등으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데라우치 통감은 흥미로운 생각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것은 “왕의 선하(宣下)에 관해서는 칙사(勅使)를 파견하시거나, 총독(總督)에게 위임하시거나, 아무래도 상당한 의식(儀式)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⁴³⁾라는 것이었다. 데라우치 통감은 조약 발표와 동시에 한국 황제를 왕족으로서 책봉하는 것을 선하(宣下=천황의 의향을 하달)하기 위해 칙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보았다. 조약 체결 전후에는 한국 황실 처우문제가 중요 안건이었지만, 체결 후에는 그러한 처우를 의식(儀式)을 통해서 밖으로 표명할 방법도 합

께 협의되고 있었다.

이러한 데라우치 통감의 요구에 대해 내각은, 궁내성안에 있듯이 왕족은 어디까지나 조서(詔書)에 의해 발표하는 것이며 선하로 할 것은 없다고 했지만, 동시에 “상당히 정중한 양식을 갖추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나타내었다. 여기서 내각이 제시한 안은, 조약 발표 날은 우선 데라우치 통감이 조서(詔書)를 한국 황제 및 태황제에게 전하는 것으로 하고, 내지에서는 발표 후 따로 칙사를 파견하고 또 하사품(下賜品)을 준다는 것이었다.⁴⁴⁾

궁내성은 왕족을 황족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통치가 현실적인 문제인 통감부는 한국병합의 체면을 중요시하여, 왕족 책봉에 대해서 그냥 조서(詔書)를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칙사를 파견해서 하사품과 함께 전달시킨다는 방법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내각은 이에 조건부로 응했다.

이는 “입황태자(立皇太子) 때의 예에 따른”⁴⁵⁾ 대우였으며, 곧 한국 황제를 황태자의 대우로 취급할 방침을 의미하고 있었다. 여기서 입황태자의 의식(儀式)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자. 『황실사전(皇室事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황장자(皇長子)는 입태자(立太子)의 의례를 행하거나 행하지 않음에 관계없이 태어났을 때부터 황태자로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입태자의 의례를 행하고 입태자의 조서(詔書)를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한다면, 황실전범의 의해(義解)에도 있듯이, 이 위엄 있는 의식(儀式)에 의하여 전 국민에게 이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해서다.⁴⁶⁾

결국 이것은 위엄 있는 의식을 통해 그 사실을 인민에게 표명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사였다. 입황태자의 의식을 왕족 선하(宣下)에 채택했다는 것은, 왕족을 그 나름의 지위로 ‘일본’ 국내에 책봉한다는 것을 의식을 통해 인민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한국 황제를 일본 황실의 지위로 책봉하는 책립식(冊立式)은 9월 1일에 행해졌는데, 이것은 8월 29일 조약 발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29일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조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일본은 그 '계약'을 발효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수락'한 천황이 한국 황제를 왕족으로 맞이하기 위해 발표 직후에 칙사를 파견한다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감부와 내각은 조약 발표가 8월 29일로 정해져 있는 이상, 그때까지 한국 황실 처우안을 정리하고 의식(儀式)의 준비도 마쳐야 했다.

그런데 8월 22일 조약 체결로부터 8월 29일 발표까지 통감부·수상·궁내성의 협의를 보면, 한국 황실 처우안 및 그 책봉 방법은 결코 원활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병합 이후 직접 조선을 통치해야 했던 통감부는 한국 황제를 황족처럼 대우하도록 요구했는데, 궁내성은 어디까지나 황족의 정통성을 고집하고 있었다. 조선통치보다 황족의 정통성을 고집하는 궁내성의 생각은 내각의 방침에도 영향을 주어, 시바타 서기관장은 “칙사 파견 때 하사품이 있다고 그에게 전보로 전했는데, 더 의논한 결과 이번에는 하사품 없이 행하는 것으로 변경한다”⁴⁷⁾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데라우치 통감은 조선통치의 측면에서 왕족 책봉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가쓰라 수상에 항의의 전보를 보낸다. 데라우치 통감은, 한국병합이 “피아통합적의사(彼我統合的意思=서로가 동의한 생각)의 발현에 의해 시국(時局)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일이므로 “한국 종실(宗室)을 영구히 존속시켜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해 상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지존(至尊=천황)의 지인지덕(至仁至德)한 넓은 마음을 일반 인민에게 표시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한국 국민을 그 은혜와 덕택으로 감동시키어 눈물이 나도록 한다”⁴⁸⁾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파견하는 칙사에게 우리 황실의 하사품을 맡겨 이것을 조서 사본과 함께 준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역사를 생각해봐도 이례는 아니라고 믿는다”라고 말하고, 황족 정통성을 고집하는 궁내성안을 부정하고 가능한 한 정중한 형식을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행위는 “즉 장래의 정략상에 적지 않은 관계가 있다”라는

언급에서도 드러나듯이 조선통치를 감안한 생각이었다.

정중한 형식을 요청한 데라우치 통감에 대해서 가쓰라 수상은, “하사품(下賜品)에 관한 안전을 재고한 결과, 칙사 파견 시에 무엇인가 일본풍의 물건을 주는 것으로 궁내대신과 협의했고, 왕·태왕·왕세자 세 명에게 두루마리(비단 같은 직물)를 주는 것으로 준비 중”이라는 전보를 보내고, 궁내대신과 협의하여 데라우치 통감의 주장에 응하기로 했다. 게다가 이 전보에서는 다음 26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는 한국 황태자(이은)의 참내(參內) 시에는 평상보다 정중한 대우를 하고 하사품도 준비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것은 데라우치 통감이 직전의 전보에서 “한국병합이 다가오는 현재, 한국 황태자에 대한 대우도 크게 변경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전과 의견이 달라진다면 한국 국민의 감정을 심하게 자극하여 그 결과 우리 천황에 대한 신의(信義)를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다”라고 주의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것으로 일본은 왕족을 황족과 동등하게 대응할 것을 더욱 명확히 했다.⁴⁹⁾

통감부가 주장한 한국 황실에 대한 처우는, 한국병합이 표면상 조선의 종속화가 아니고 ‘피아통합적의사(彼我統合的意思)의 발현’인 것으로 하는 데 불가결한 것이었으며, 장래의 조선통치를 고려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통감부는 반드시 왕족을 황족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통치상 이점(利點)에 따라 왕족은 황족이 아니라고 간주하기도 했다. 그 단적인 예로, 왕족의 감독권문제에 대해서는 통감부와 궁내성의 생각이 역전되고 있다.

궁내성은 왕족 감독에 관해서 황실령(皇室令)을 발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왕족 감독권은 궁내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데라우치 통감은 가쓰라 수상에게 전보를 보내 총독이 왕족 감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라우치 통감은 이 전보에서, 먼저 왕족의 세비(歲費)를 국고(國庫)로부터 직접 지출하는 것은 왕족을 황족과 구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여, 왕족과 황족의 차이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이 생각을 기초로

궁내성이 왕족 감독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더 나아가 “원래 정치상 회란의 원천인 구 한국 황실에 대한 감독권을 직접 그 땅의 통치자가 될 총독의 권력 내에 놓지 않으면 장래 성공적으로 통치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갑자기 심상의 순서로 황실령(皇室令)을 발포하는 것은 성급한 정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데라우치 통감은, 왕족 감독권문제는 중대한 안전이기 때문에 통감 혹은 부통감이 상경했을 때 협의해야 하므로, 시급한 황실령 발포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⁵⁰⁾ 왕족 감독권문제에 관해서는 실제적인 통치를 고려한 방침이 우선되어 한국병합이 ‘피어통합적의사(彼我統合的意思)의 발현’인 것처럼 미봉해야 할 필요는 일단 제쳐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은 왕족을 황족으로 간주하지 않는 요인이 되었다.

일본에는 한편으로 통감부의 왕족에 대한 서로 모순적인 생각이 병행하여 존재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한편 궁내성을 중심으로는 황족 정통성을 주장하는 생각이 복잡하게 교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생각 때문에 신민이 아니지만 황족도 아닌 계급, ‘…가 아니다’라는 부정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왕족이라는 계급이 창설되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일본 황실의 은혜와 덕택을 받는’ 것으로 황족과 같은 외면을 가진 존재였지만, 동시에 ‘정치와의 관계가 끊긴’⁵¹⁾ 존재로서, 당시까지의 일본에도 존재하지 않는 계급이었다. 왕족은 ‘일체(一體=황족의 예우를 받는다)’와 ‘차이(差異=황통으로부터 배제된다)’의 상반되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은 표면상 내지와 같은 ‘일본’이라고 설명되면서도 내지와는 구별된 조선이라는 존재를 표상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조선이 ‘일본’의 일부이며 식민지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내지와 구별된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그러한 모순을 덮어 가리기 위해서 ‘융화’라는 명목을 항상 재생산해야만 했다. 한국병합이 한국 황실에 의한 통치권의 ‘양도’라는 명목으로 행해진 이상, 원래 한국 황실이었던 왕족이 명목의 재생산에 관계가 없을 리 없었다. 이렇게 해서 왕족과 황족에 의한 정략결혼이 황실전범 개정이라는 곤란한 문제를 안으면서도 단행되어갔던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왕족 이은과 황족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의 결혼이 황실전범 개정이라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서도 집행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를 왕족의 양면성을 통해서 설명해보았다. 왕족의 양면성은 왕족 창설 과정에서 통감부·한국 정부·궁내성 사이의 술책에 의해 형성되었다. 만약 한국병합을 실시하는 데 한국 황제에 의한 통치권의 '양도'라는 명목이 필요 없었다면, 만약 한국 측이 왕호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만약 일본이 '일본인', '황족'에 대한 배타적인 순혈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왕족이라는 애매한 계급은 창설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병합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요인이 존재했고, 그리하여 황족이라고도 황족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왕족이라는 계급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창설된 왕족은 내지와 조선의 '융화'라는 한국병합의 명목 형성에 이용된다. 왕족을 '융화'에 이용하는 세력은 왕족을 마치 황족처럼 대우했으나, 황족의 경계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은 황족에서 왕족을 배제하려고 했다. 즉 명확한 규정이 없는 왕족은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변화했던 것이다.

왕족 창설기에 통감부는 한국병합 후의 조선통치를 고려해서 왕족을 황족과 같이 대우하려고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병합이 '피아통합적의사(彼我統合的意思)의 발현'인 것처럼 미봉하여 한국 국민의 찬동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궁내성은 그러한 방침에 반대했다. 통감부가 왕책립(王冊立) 때 칙사(勅使)를 파견해서 정중하게 거행해야 한다고 진언한 것에 대해서도, 궁내성은 어디까지나 칙사를 파견하지 않고 형식대로 거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족 정통성을 중요시했던 것이다.

궁내성과 대립하며 왕족을 황족으로 간주하자고 주장했던 통감부였지만, 그들이 중요시한 것은 조선통치이며, 조선통치를 위해서 이점이 된다고 판단

될 때는 왕족을 황족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궁내성이 왕족에게 황실령(皇室令)을 적용하여 궁내성 감리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통감부는 “왕족은 황족이 아니므로 황실령은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여 통감부(병합 후의 총독부)가 감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왕족을 둘러싼 세력에 따라 왕족의 해석은 어지럽게 변화하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병합의 명목(名目)이 선전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은과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의 결혼계획이 나오게 된 것이다.⁵²⁾ 이 결혼에서 왕족이 황족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융화’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상, 그와 동시에 왕족이 황족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황실전범 개정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이은과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의 결혼은, 황실전범에 ‘황족 여자는 왕족 또는 공족에게 시집갈 수 있음’이라는 문장을 증보(增補)하는 것으로 실현되었다. 이는 황실전범을 개정하는 일 없이, 계다가 여왕(女王) 뿐만 아니라 내친왕(內親王)도 왕족과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왕족을 황족과 같이 간주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황족의 여자만을 왕족의 결혼 대상으로 하여 황족에게 왕족의 핏줄이 들어가는 길을 차단한 것이기도 했다.

일본은 조선통치가 식민지화라는 사실을 ‘융화’라는 말로 덮어 가리려고 했는데, 일본이 그러한 방침을 집행하는 이상 언젠가는 왕족과 황족이 ‘융화’의 표본으로서 결혼해야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렇게 미봉책으로 외관을 다듬어도 실제로는 일본이 황족의 정통성을 다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왕족과 황족의 결혼은 황실전범 개정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

왕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서 황족과 같이 대우된 것처럼, 조선은 ‘일본’이라는 애매한 말로 통치되었다. 그리고 왕족을 황족에 넣지 못한 것처럼, 조선은 내지와 구별되어 통치되었다. 왕족을 통해서 조선통치의 명목과 실제 정책의 괴리를 살펴봤는데, 그것은 그대로 ‘일본’에서의 조선과 내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왕족이 정책의 여러 장면에서 ‘일체(一體)’와 ‘차이(差

異)의 양면을 나타낸 것처럼, 조선도 그러한 양면성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일체(명목으로서의 융화)' 만으로도 '차이(내지와 조선의 구별—식민지적 통치)' 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조선통치의 역사는, 이 상반되는 개념이 동시에 존재했음을 파악해야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조선통치가 식민지화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과 대한제국의 관계상, 일본은 구미의 식민지 통치처럼 조선을 분명히 식민지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과 내지를 동등하게 통치하는 것처럼 '일본화(日本化)'라는 방편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조선인이 보면 식민지화도 '일본화'도 주권을 빼앗긴 것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통치자는 종주국-식민지라는 주종관계가 아니라는 명목으로 통치하면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통치에서는 한국병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조선을 '일본화' 하는 것, 즉 동화(同化)정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조선의 개별성을 빼앗는 행위가 '조선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실행된다는 뒤틀린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예를 들면 창씨개명(創氏改名)을 생각할 때도 중요하다. 일본은 이미 1911년에 제정한 총독부령 제124호 「조선인의 성명 개칭에 관한 안건」으로 조선인이 내지인과 구별하기 어려운 성명을 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는데도, 1940년이 '황기(皇紀) 2600년'이라는 이유로 '은전(恩典=혜택)'으로서 창씨개명을 실시했다. 물론 창씨개명에는 조선에 징병제(徵兵制)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조선의 개별성을 말살하는 것이 조선인에 대한 '은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던 것 역시 본문에서 밝힌 뒤틀린 구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개별성의 말살이 마치 바람직한 일처럼 행해진 이 구조는, 개별성을 분명히 말살하는 것보다도 더욱 비판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대사회에 던지는 이 '정략결혼'의 역사적 의미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싶다.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왕족이란 조선을 표상하는 존재로서 쉽게 조

선통치에 이용되었다. 그것은 황족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특정의 지역을 대표하고 상징이 될 수 있는 존재는 권력을 가지기 쉽지만, 동시에 권력에 이용되기도 쉽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황실에 관련된 문화가 유행하고 황실을 바라는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2001년에 개설된 '대한황실재건회'라는 사이트도 존재한다. <http://www.hwangsamo.com/>) 이 논문은 그러한 경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민족주의의 고양은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영웅을 필요로 한다. 황우석 교수의 사건은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감정은 황실을 바라는 생각과 결합되기 쉬울 것이다. 그런데 핏줄의 세습만으로 카리스마를 가지는 황실은 너무 불안정한 존재이다. 조선통치에서 이은과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가 이용된 것처럼, 그리고 이은의 한국 귀국이 실현된 이유가 그 카리스마를 이용하려 했던 박정희 때문인 것처럼, 황실 자체가 권력을 가지지 않아도 집정자는 그와 정치를 연결시키려고 한다. 국민이 카리스마를 기대하면 할수록 그러한 경향은 강해진다. 태어났을 때부터 민주화된 사회에서 자라온 젊은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왕족 이은과 황족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가 아니라, 인간 이은과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의 결혼이라는 관점에서 이 결혼에 대해 약간 첨언하고 싶다. 이 결혼 직전에 이태왕이 서거하고 암살당했다는 소문이 나돌아 마사코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은은 그런 마사코를 돌보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마사코는 “그 따뜻한 마음을 느꼈을 때, 이 분과 함께라면 격동하는 어떠한 운명에도 참아갈 수 있다는 용기가 마음으로부터 가득 넘쳐흐르는 것을 느꼈다”라고 한다. 결혼 직전에는 마사코가 금(琴)을 연주하고, 맑은 날에는 산책이나 테니스를, 비 오는 날에는 방에서 트럼프를 했다. 마사코는 과묵한 이은 옆에서 “단지 함께 있을 뿐인데 가슴 깊이 여자의 행복을 깨달았다”⁵³⁾라고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평민도 황족도 아닌, 그리고 한국인도 일본

인도 아닌 두 사람은 무국적으로 고생스럽게 살아갔다. 그러던 중 이은이 뇌혈전으로 쓰러지기까지 했으나 두 사람이 헤어지는 일은 없었다. 1970년 4월 28일에 금혼식(金婚式=결혼 신 돌을 축하함)을 맞이한 나흘 뒤, 이은이 세상을 떠났다. 마사코는 한국에서 장애인복지재단 명휘원(明暉園)을 설립하여 복지활동에 전념하다가 1989년에 세상을 떠났다. 복지활동은 생전의 이은이 계획한 것이었고, 명휘는 이은의 아호(雅號)였다.

주제어: 왕족, 황족, 정략결혼, 귀종성(貴種性), 왕호(王號), 체면, 명목.

- 1) 한국에서는 한일합방(韓日合邦)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조약 이름인 한국병합(韓國併合)을 그대로 사용했다. 한국 국립국어원이 펴낸 『표준 국어대사전』(1999)은 한일병합(韓日併合)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있고, 한일합방은 한일병합의 이전 용어라고 설명하고 있다.
- 2) 한국병합 이후의 반도(半島)를 나타내는 말로는 ‘조선(朝鮮)’을, 일본 열도(列島)를 나타내는 말로는 ‘내지(內地)’를 당시 사용되었던 대로 사용한다.
- 3) 1929년에 외지(外地) 통치를 위한 중앙통일기관으로서 칙무성(拓務省)이 설치된다. 원안에는 적식성(拓殖省)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조선이 식민지가 되어버린다는 이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4) 「前韓國皇帝ヲ册シテ王ト爲スノ詔書」, 1910년 8월 29일 발표.
- 5) 高久嶺之介, 「大正期皇室法令をめぐる紛争(下)」, 『社會科學』, 第34號, 1984; 高久嶺之介, 「近代日本の皇室制度」, 鈴木正幸 編, 『近代日本の軌跡 近代天皇』, 吉川弘文館, 1993.
- 6) 高久嶺之介(1993), 158쪽.
- 7) 李英珠, 「通婚規則からみた皇室の『純血性』」, 『日本民俗學』, 第225號, 2001. 이 연구의 관심은 왕족이 아니라, 황실을 통해 일본의 ‘家’ 제도를 고찰하는 데 있다.
- 8) ‘가 없는 일본은 한국병합 이전의 일본을, ‘일본’은 한국병합 이후 열도(列島)와 반도(半島)를 포괄하는 영역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용한다.
- 9) 『讀賣新聞』, 1916년 8월 3일.
- 10) 李方子, 『流れのままに』, 啓佑社, 1994, 30쪽.
- 11) 李方子(1994), 30쪽.
- 12) 權藤四郎介, 『李王宮秘史』, 朝鮮新聞社, 1926, 164쪽.

- 13) 조선귀족은 “그 작위(爵位)에 응하여 화족령(華族令)에 의해 유작자(有爵者)와 동일하게 대우 받음”이라고 규정되어, 법률상 화족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 이는 왕족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은 채 단순히 조서(詔書)에 의해 “왕족의 예우를 받고 특히 전하(殿下)의 경칭(敬稱)을 사용함”이라고 애매하게 처리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 14) 이 결혼계획이 알려지자 경성(京城)의 에조시아(繪草紙屋)에서는 이은과 마사코의 초상화가 판매되어, 경성에 올라온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샀다고 보도되었다. (『東京朝日新聞』, 1918년 11월 28일) 한편 결혼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내지에서는 약혼발표와 동시에 도쿄 시부야(澁谷) 미타케(美竹)의 나시모토노미야 저택으로 끊임없이 협박전화가 오고, 벽에는 낙서와 깃곳은 벽보가 붙었다고 한다. (渡邊みどり, 『日韓皇室秘話 李方子妃』, 讀賣新聞社, 1998)
- 15) 高久嶺之介(1984), 124쪽.
- 16) 왕공가계법의 공(公)은 공족(公族)을 의미한다. 공족이란 한국 황제의 친족들로서, 순종 황제의 남동생인 이강(李垺)이나 고종 태황제의 형인 이재면(李載冕) 등을 들 수 있다. 왕족과 같이 황족의 예우를 받고 특히 전하(殿下)의 경칭(敬稱)을 사용했으며, 그 지위는 세습이었다. 공족의 부인은 공비(公妃)라고 했다.
- 17) 왕공가계법은 결혼문제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병합 이후에 뒤로 미뤄져왔던 왕족의 법적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
- 18) 高久嶺之介(1984), 119쪽.
- 19) 여기서 말하는 여왕은 왕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황으로부터 5촌 이하의 황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자는 왕) 4촌 이상의 여자는 내친왕(內親王), 남자는 친왕(親王)이라고 했다.
- 20) 高久嶺之介(1984), 129쪽.
- 21) 原奎一郎編, 『原敬日記』, 第5卷, 福村出版, 1981, 19쪽.
- 22) 高久嶺之介(1984)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법안에 개정 반대파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통해 그들을 회유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 23) 친황이 어리거나 정무를 맡지 못할 경우에 친황 대신에 정무를 맡거나 친황을 보좌하는 관직. 이 관직은 고셋케(五攝家)가 맡았다.
- 24) 鈴木正幸, 『皇室制度』, 岩波書店, 1993, 71쪽.
- 25) 「前韓國皇帝ヲ冊シテ王トナスノ詔書」, 1910년 8월 29일 발표. 책립(冊立)은 칙명(勅命)에 의해 황태자나 황후를 정식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왕족에 관해서는 책립이라는 말보다 ‘책(冊)함’ ‘왕책립(王冊立)’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
- 26)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에는 각의(閣議)가 기초(起草)한 안(案)을 추밀원에 자문하는 것으로 채택하고, 제국의회에서 동의를 얻는 일이 없이 그것을 긴급칙령으로서 발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제8조) 일본은 조약 체결을 친황대권(天皇大權)으로 행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었으나, 한국병합 조약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데라우치 통감이 한국병합 조약 체결을 꾀하던 당시 일본에서는 국회가 폐회 중이었기 때문에 긴급칙령이라는 수단을 채용해야 했다. 만약 처음부터 긴급칙령이라는 수단으로 법 정비(整備)를 하고 나중에 의회에 지문하러 했다 해도, 그 긴급칙령 제정조차 조약 체결에 맞춰서 미리 처리된 것이 아니라 조약 체결 당일에 가까스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조약 체결과 한국병합에 관한 법 정비(整備)가 보조(步調)를 맞춰서 실행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 27) 「統監府及理事廳官制」, 1905년 12월 21일 발표.
- 28) 小松綠, 『朝鮮併合之裏面』, 中外新論社, 1920, 87~88쪽.
- 29) 『韓國併合ニ關スル書類 發電』(內閣, 1910, 單行書, 國立公文書館所藏), 8월15~16일, 柴田 서기관장이 兪玉 비서관에게 보낸 전보.
- 30) 조약 체결이 한국 측에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통감부 측이 한국 공내부에 미리 준비를 해두었기 때문이다. 한국병합 체결 후에 데라우치 통감이 가쓰라 수상 앞으로 보낸 한국병합 전말(顛末)에 관한 문서를 참조.
- 31) 小松綠(1920), 90~91쪽.
- 32) 市川正明 編, 『日韓外交史料』 第8卷, 原書房, 1980, 327~328쪽.
- 33) 市川正明 編(1980), 331쪽.
- 34) 小松綠(1920), 132쪽.
- 35) 木村幹, 『朝鮮/韓國ナショナリズムと「小國」意識』, ミネルヴァ書房, 2002, 268~269쪽.
- 36) 市川正明編(1980), 332쪽.
- 37) 『韓國併合ニ關スル書類 着電』, 8월 23일, 兪玉 비서관이 柴田 서기관장에게 보낸 전보.
- 38) 『韓國併合ニ關スル書類 發電』, 8월 23일, 柴田 서기관장이 兪玉 비서관에게 보낸 전보.
- 39) 『韓國併合ニ關スル書類 着電』, 8월 24일, 寺內 통감이 桂 수상에게 보낸 전보.
- 40) 『韓國併合ニ關スル書類 發電』, 8월 25일, 桂 수상이 寺內 통감에게 보낸 전보.
- 41) 李王垠傳記刊行會 編, 『英親王李垠傳』, 共榮書房, 2001, 221~223쪽.
- 42) 『第貳世王族譜』(李王職, 1932寫, 藏書閣所藏). 왕족보에 관해서는 金英達, 「朝鮮王公族の法的地位について」, 『靑丘學術論集』, 第14集, 1999, 131~140쪽을 참조.
- 43) 『韓國併合ニ關スル書類 着電』, 8월 19일, 寺內 통감이 柴田 서기관장에게 보낸 전보.
- 44) 『韓國併合ニ關スル書類 發電』, 8월 20일, 柴田 서기관장이 寺內 통감에게 보낸 전보.
- 45) 『韓國併合ニ關スル書類 發電』, 8월 20일, 柴田 서기관장이 寺內 통감에게 보낸 전보.
- 46) 井原頼明, 『皇室事典』, 富山房, 1938, 17쪽.
- 47) 『韓國併合ニ關スル書類 發電』, 8월 22일, 柴田 서기관장이 兪玉 비서관에게 보낸 전보.
- 48) 『韓國併合ニ關スル書類 着電』, 8월23일, 寺內 통감이 桂 수상에게 보낸 전보.
- 49) 왕족에 대한 '정중' 한 대우로서 금전적인 면을 보면, 이왕가의 세비(歲費)로는 한국 황실 비였던 150만 엔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될 당시, 히가시쿠니노미야(東久邇宮)가의 황족비가 11만 엔, 나시모토노미야(梨本宮)가의 황족비가 3만8천 엔, 수상

의 연봉이 1만 엔 전후였다. 이왕가 세비는 천황가 다음으로 많았다.

- 50) 『韓國併合ニ關スル書類 着電』, 8월 27일, 寺内 통감이 桂 수상에게 보낸 전보.
- 51) 『韓國併合ニ關スル書類 着電』, 8월 30일, 寺内 통감이 桂 수상에게 보낸 전보.
- 52) 『讀賣新聞』, 1917년 1월 6일 기사에는 “일선영구(日鮮永久)의 계(契)는 메이지천황(明治天皇)이 아직 살아 계실 때 생각하시고 고 한국통감 이토 공작(公爵), 전 조선총독 데라우치 원수(元帥), 하타노 궁내대신 등이 그 천황의 마음을 배승(拜承)한 일”이라고 쓰여 있다. 이 은과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의 결혼은 한국병합 전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53) 李方子(1994), 63~64쪽.